

#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6. 13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6. 12. 강남구청장(기획예산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6. 13.)  
“원안가결”

### 2. 제안설명 요지( 기획경제국장 : 양미영 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
-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감면대상자

-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
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○ 재산세(구세) 감면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(구세)를 면제한다.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제3항
-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기 타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**

- 재산세과에 따르면, 감면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로 “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”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도 해당됨.

- 강남구가 시행할 수 있는 감면사항은 2023년 재산세(구세)에 대한 감면이며, 재산세 중 시세분(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)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서울시의회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결(2022. 11. 15.)로 처리됨.

<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안>

세 목		부과대상	납기
①	주민세 개인분*	· 사망자 가족 (개인, 개인사업자) *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업 소분 포함	8월
	자동차세 소유분	·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	6월, 12월
②	재산세	·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·주택 등	7월, 9월
	지역자원 시설세	· 사망자 가족 (소방분)	
③	취득세	·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 하는 경우	사망일부터 6개월 內

□ 감면규모는 2022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볼 때, 68,524천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임. 주소지가 타시도라도 과세대상이 강남구인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며, '22년 우리구 감면대상자는 '22.11.18. 행안부 감면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볼 때, 5명으로 추정됨.

세목	물건수	합계	재산세	도시지역 분	지역자원 시설세	지방교육 세
합계	11	227,104,290	137,048,430	52,255,580	10,391,160	27,409,620
재산세(건축물)	5	29,496,340	10,917,720	6,113,160	10,281,940	2,183,520
재산세(주택)	3	15,093,170	8,901,320	4,302,390	109,220	1,780,240
재산세(토지)	3	182,514,780	117,229,390	41,839,530	-	23,445,860

※ 재산세 중 50%는 구세, 50%는 특별시분에 해당 → 137,048,430원 ÷ 2 = 68,524,215원

□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상급기관의 유권해석과 지시에 의한 것으로, 구의회회의 결을 득하면, 강남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재산세 전체 중 50%를 다가올 '23년 7월과 9월에 감면 추진할 예정임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끝

#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6월 12일  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
- 나. 사회재난\*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\* 이태원 사고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선포('22.10.30.)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감면대상자

-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 
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### 나. 재산세(구세) 감면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(구세)를 면제한다.

## 다. 등록면허세(구세) 감면

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등록면허세(구세)를 면제한다.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○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【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】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 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  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 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#### ○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

-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